

제391회 국회
(정기회)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1년9월8일(수)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과 난민보호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112137)
2.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만행 규탄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112262)
3. 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결의안(의안번호 2111733)
4.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의 '군함도(하시마탄광) 강제노역 명시' 권고 등에 대한 일본의 즉각적인 약속 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112022)
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557)
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01)
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95)
8. 거래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36)

상정된 안건

1.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과 난민보호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75인 발의)(의안번호 2112137) 2
2.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만행 규탄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김석기 의원 등 48인 발의)(의안번호 2112262) 2
3. 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결의안(배현진 의원 등 103인 발의)(의안번호 2111733) 8
4.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의 '군함도(하시마탄광) 강제노역 명시' 권고 등에 대한 일본의 즉각적인 약속 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양정숙 의원 등 68인 발의)(의안번호 2112022) 8
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57) 11
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01) 11
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95) 11

(11시03분 개의)

○소위원장 이재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우리 소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재정 예, 열심히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외교부 소관 결의안 등을 먼저 심사하고 통일부 소관 법률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의 발의 취지, 대체토론의 요지, 심사 경과, 수정의견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외교부 안건 심사를 위해 최종문 제2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최종문입니다.

○**소위원장 이재정**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과 난민보호 촉구 결의안
(이용선 의원 등 75인 발의)(의안번호 2112137)

2.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만행 규탄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김석기 의원 등 48인 발의)(의안번호 2112262)

○**소위원장 이재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이용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과 난민보호 촉구 결의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만행 규탄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동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 자료 1쪽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국민이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탈레반의 만행을 규탄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동결의안은 시의성이 높으며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재정** 다음은 차관계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과 난민보호 촉구 결의안에 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간 내 인권 보장과 아프간 평화 정착은 지난 20년간 우리 정부의 대 아프간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는 점에서 결의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 온 현지인 직원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391명을 국내로 이송하였으며 국내에 체류 중인 400여 명의 아프간인에 대해 지난 8월 25일 특별체류 허가 등 보호조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난민 문제와 관련하여 유엔난민기구(UNHCR) 통계에 따르면 금년 들어 신규 발생한 아프간 국내 피난민은 57만여 명에 달하며 인근국으로 피신한 난민은 약 1만 6500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년간 아프간 내 항구적 평

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 왔고 총 10억 불 규모를 지원하였으며 약 3500만 불을 추가 지원키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한 경우 난민촌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여 왔고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재정**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김홍걸 위원** 전문위원께 질문 하나 할 게 있는데요.

난민 심사는 법무부가 법규에 따라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이 결의안 내용에 ‘국회는 정부가 이들에 대한 난민 인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하는 식의 주문을 하면 그게 체계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까요?

○**수석전문위원 지동하** 정부에 대해서 국회가 결의안으로 어떤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을 촉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홍걸 위원** 저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난민을 보호하고 가능하다면 난민 인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재정** 다른 위원님들 의견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용 위원님.

○**조태용 위원** 외교부차관계 물겠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391명? 전체가 몇 명이 들어왔지요, 한국에?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391명이 들어왔습니다.

○**조태용 위원** 한국에 391명이 들어오고 나중에 한 사람 추가로 들어와서……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포함해서 391명입니다.

○**조태용 위원** 포함해서, 그 외에 우리 사업에 협력을 했던 아프간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가로 모시고 들어와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명단을 작성했을 때 총 인원은 427명이었습니다. 427명 중에서 본인이 스스로 한국을 오는 것을 포기한 사람도 있고요, 또 공항에 나타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427명 중에서 391명을 제외한 그분들은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한국으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27명을 넘어서는, 뒤늦게 여러 가지 직원 이메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아주 다수는 아닙니다—파악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의 신원이 어떤지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태용 위원 두 번째는 그 391명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홍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분에 대해서 체류 자격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 하는 것 관련해서 법무부가 주로 주무부처가 되긴 되겠습니다만 외교부는 지금 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서 특별한 다른 의견은 없는 건가요?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예, 저희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조태용 위원 일부 난민이나 인권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체류 자격을 한정해서 준 것이 사실은 우리의 난민 정책이 선진국답지 못하고 좀 뒤떨어졌다고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외교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이번 391명 들어온 것은 사실 난민 자격으로, 예를 들어서 UNHCR에 본인들이 갔다거나 또는 한국에 어떻게 입국을 해서 난민 자격을 신청한 게 아니고요. 우리 역사상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도 고려해 갖고 법무부에서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또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으로서 당연히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용 위원 난민 자격으로 체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하고 지금 법무부가 취한 체류 자격을 주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그 점은 법무부에 확인하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겠는데요. 약간의 차이는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조태용 위원 지금 국내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인도 체류 기한이 다 종료가 되더라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인도적인 차원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이지요?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예, 그렇습니다. 400여명에 대해서 지난 8월 29일 특별체류 허가 보호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조태용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는 기간만큼 한국에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과문한데요. 그것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조태용 위원 실무자가 대답할 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외교부본부대사 홍영기 아직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조태용 위원 그러면 무기한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되는 건 아니고?

○외교부본부대사 홍영기 예, 그렇습니다.

○조태용 위원 정책적 판단이 달라지면 바뀔 수 있다가?

○외교부본부대사 홍영기 예.

○조태용 위원 언제 끝난다는 기간 만료에 대한 것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외교부본부대사 홍영기 예, 그렇습니다.

○조태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두 가지 결의안이 나왔는데 한 결의안은 8월 20일 제출되고 하나는 일주일 뒤에 제출이 되다 보니까 이용선 의원님 발의하신 결의안 중에서 제가 보기에 좀 상황이 바뀌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부분들이 보입니다.

특히 1항하고 2항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 부분 이미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이런 점도 저희 소위원회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마는 큰 방향에서 두 결의안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로 병합해서 저희가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문안을 만들 때 혹시 이미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있는 것은 꼼꼼히 걸러내고 잘 만들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호 위원 저도 한 가지 간단하게……

○소위원장 이재정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지금 탈레반 정권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조는 어떻게 됩니까?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탈레반 정권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사실 이른 감이 있습니다. 일단 탈레반은 8월 15일이지요, 카불까지 장악한 이후에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국제사회와 협력을 희망’을 하고 또 전 정권 및 외국기관 협력자에 대해서

사면을 하겠다. 이슬람 율법하에서이긴 하지만 여성인권 존중, 언론활동 보장 등등을 하겠다'라고 해서 과거와는 약간 다른 입장을 표명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사실 임시내각도 어제야 발표를 했었습니다, 즉 지연되다가. 그래서 이 신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아프간을 이끌지에 대해서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의 경우는 탈레반이 과거와는 달리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며 테러리즘의 피난처를 불허한다면 같이 일할 용의가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우리 한국 정부를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추가적으로 한국에 입국을 원했을 경우에는 탈레반 정부 쪽이랑 우리 정부가 지금 소통이 가능하냐는 것도 하나 질문이고요.

또 탈레반 정권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협력할 의사를 혹시라도 우리 정부 측에 전달한 적이 있나요?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지금까지는 탈레반 정부가 수립되지 않았고 어제 임시내각이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감안할 경우에 일단 탈레반의 주요 인사들은 아프간인이 도큐먼트(document), 여권이 있고 그다음에 해외를 방문할 수 있는 비자가 있을 경우에는 자유롭게 해외 출국을 할 수 있고 다시 입국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은 피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91명을 이송할 때 처음에 그 427명에 대해서 다 비자 관련 도큐먼트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것을 다 출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볼 때는 탈레반이 발표한 대로라면 아프간을 떠나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탈레반하고 지금 양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이재정** 태영호 위원님.

○**태영호 위원** 차관님, 391명 중에 미성년자가 몇 명이지요?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한 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태영호 위원** 100명?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예.

○**태영호 위원** 나도 100명인 것으로, 언론에 그

렇게 보도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100명 중에 무연고 청소년·아동이 있는가요?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없습니다.

○**태영호 위원** 한 명도 없어요?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예, 한 명도 없습니다.

○**태영호 위원** 다른 나라들에서 와서 나갈 때 보면 부모들이 내 애만은 보내 달라 이렇게 담장으로 넘기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무연고가 한 명도 없네요?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예, 저희는 이송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391명 그분들이 다 한국 정부기관과 수년간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 일하는 방식을 알고 그래서 그렇게 무연고 아동이 같이 들어온다거나, 그러니까 부모가 못 들어온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가족들하고 다 같이 있습니다.

○**태영호 위원**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탈출할 때는 부모들이 자기 애라도 좀 데려가 달라고 막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우리가 아프간 현지에서 탈출할 때는 자기 애만은 데려가 달라 이런 요구가 한 번도 없었어요?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예, 그런 일 없었습니다. 저희는 중간집결소 두 군데를 정했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한테만 저희가 이메일을 보냈고……

○**태영호 위원** 그 사람들 안으로만 우리가 공지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몰랐겠네요?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예, 그건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버스 6대에 나눠서 공항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태영호 위원** 그러니까 391명에 대한 신원 자료는 우리가 이미 다 파악했던 사람들만 결국 선택해서 데려왔다 이거지요?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예, 그 점은 저희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그 사람들이 우리 정부기관에 취업할 때, 저희가 채용을 할 때부터 신원을 철저히 확인했고 그리고 떠날 때도 다시 한번 우리 관계기관에서 또 확인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태영호 위원** 그리고 지금 탈레반 측이 현지에 있는 우리 공관에 대해서 침입했거나 아니면 약탈해서 집기류를 가져갔거나 이런 현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가요?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저희 직원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아서 정확히 확인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약간의 집기라든가 이런 게 좀 손상이 가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는데 이게 과연 동네 불량배들 것인지 아니면 탈레반이 조직적으로 한 건지 그것은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태영호 위원 아니,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전 세계 모든 공관들에는 다 CCTV를 설치하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핸드폰으로 자기 공관 내부를 다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른 나라들은 다 되어 있거든요. 지금 북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지에서 핸드폰으로 지금 공관에 누가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장치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물론 저희도 CCTV는 설치를 해 놔는데……

○태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서울에서 거기에 침입자가 있는지 없는지 다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그것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영호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어서 없는지 아니면 우리 재외공관에 아예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는지 우리 외교부에서,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제가……

○태영호 위원 그래서 전 세계는 다 아무 곳에 가셔도 핸드폰으로 자기 공관을 항상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면 이것 대단히 허술한데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지요?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저희 공관별로 현황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부는 안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전체 공관을 전수조사를 해서……

○태영호 위원 그러니까 일부 되어 있는 공관도 있어요?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예, 되어 있는 공관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영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일처럼 비상 상태에서 급히 우리가 빠져 나왔다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공관에서 태워야 할, 없애 버려야 할 그런 중요한 물건도 있을 수 있고요. 공관이라는 데가 원래 엄청 비밀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기 때문에 항시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

는 되어 있고 아직도 일부는 안 되어 있다, 이것은 진짜……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위원님, 그 파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시고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태영호 위원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IT 강국인데 다른 나라도 다 하고 있는 이 정상적인 시스템을 외교부가 아직 구축 안 했다? 저는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아직 안 되어 있네요?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아닙니다. 제가 안 돼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태영호 위원 그 구체적인 자료를 지금 현재 우리 해외 공관에서 정확히……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복도라든가 모든 곳에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있는지 없는지 원거리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고, 가령 예를 들면 그런 침입이 발생했다라면 서울에서도 그 주변 경찰에 알려서 ‘빨리, 이런 일이 있다’……

나라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기니에서도 또 쿠데타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외교관이라는 것은 항상 임의 시각에 탈출할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게 정상인데……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태 위원님, 저희가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CCTV가 일반 기업체도 있는데 대사관도 있는데요.

○태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먼 데서도, 우리가 서울에서도……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그래서 침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공관장이나 그 공관 담당 직원한테 즉각적으로 경고 벨이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저희 전체의 공관과 관저에 다 갖추고 있고요.

○태영호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비상사태 시에 외교관들이 급히 빠져나와서도 여기 와서 불안하니까 그래도 여기 앉아서, 서울에서 지금 공관에 그런 도적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중요 시설들, 예를 들면 문건 같은 것 급히 나오느라고 소각 못했는데 누가 들어가서 그 피켓 열고 거기서 꺼내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갖고 위원님께……

○**태영호 위원** 그것 구체적으로 해서 의원실로 좀, 현재의 지금 상황이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그런 우리 대사관들에서 위기 상황 시 이게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도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은 진짜 그것은 대단히 충격적인데,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상황도 이것 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알려 주세요.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예.

그런데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희 공관과 관저의 외부 침입이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통같이 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태영호 위원** 글썽, 그러니까 현지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전원이 다 현지에서 나와서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도 항시적으로……

아니, 지금 개인들도 그렇잖아요. 여행 가서 자기 집에 도적이 들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해수욕장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시대인데 국가, 그것도 제일 비밀을 많이 다루고 있는 대사관, 공관이 이런 시스템을 아직 안 갖췄다, 그것도 아프가니스탄처럼 정세가 긴장…… 안 되니까 이것 좀 빨리 대책을 하고 현 상황을 의원실로 보내 주세요.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재정** 지성호 위원님.

○**지성호 위원** 차관님, 지금 탈레반 정부가 들어서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국제적인 인권 기준이라든가 지킬 용의가 있을 때 우리 정부가 탈레반 정부랑 협력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보면 탈레반이 우리 국민을 피살한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샘물교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풀어 나갈 계획인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지성호 위원** 협력을 하려면……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지금 현재는 대화하면 이런 대화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야 공식 정부, 아직도 임시내각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제야 나왔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탈레반 정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에는 당분간 시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서방 국가들의 경우도 탈레반하고 직접 접촉하는 국가를 저희가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그 국가하고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의 경우는 아직까지 자국민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고 자국민과 협력했던 협력 인사들도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세이프 패시지(safe passage), 그러니까 안전한 출국을 허용해 달라 그런 점에 있어서만 대화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재정** 조태용 위원님.

○**조태용 위원** 우선 지성호 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 하나만 하지요.

아시는 것처럼 2007년에 아주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분이 두 분 희생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탈레반이 그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그냥 팩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해서 국제사회가 탈레반하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도 아마 소통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텐데 그때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정부의 결기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짚어야 될 점을 짚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우리에게 대한 존중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런 과정이 오게 되면 꼭 중요한 숙제로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예,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재정** 저도 위원님들께 간략히 동의를 구해 보면요. 두 결의안 내용 중에 대동소이하기는 한데 이용선 의원님 안은 아프간으로부터 탈출한 난민 등에 대한 보호의 의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계시고요. 김석기 의원님 안은 아프간 안의 인권침해 상황, 특히 여성 인권에 대한 우려와 규탄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의성에 따라서 조금 조정돼야 될 문구는 조정을 하되 저도 또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자 하면 두 의원님들의 어떤 모두 부분, 전체로 달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거시하는 부분에 있

어서 언론을 인용한다든지 한 부분은 결의안 내용에서는 조금 줄이든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표현들을 하면 어떨까 싶고요.

‘외신에 의하면’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우리 국회 결의안에서는 인용하기는 좀 부적절해 보여서요 내용을 축약할 수 있고 우리가 확인된 사실을 전제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우려와 규탄으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보면 하는데 어떠신가요?

다른 내용들은 각기 의원님들이 취지를 밝히신 내용들을 함께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확인을 좀 하나 하고 싶었던 게 그것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외신이나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아주 구체적인 사안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로 좀 확인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지금 확인이 됐다라고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탈레반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인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무정부 상태에서 발생하는 일탈 행위들인지에 대한 확인은 좀 됩니까?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저희가 대사관도 철수했고 한국인은 1명도 남아 있지 않아서……

○김경협 위원 이게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이제?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고요. 저희가 우방국들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인들도 100% 확신을 할 수는 없다, 다만 탈레반의 지도부와 그다음에 말단 조직 간에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다, 그 정도 얘기고요.

지금 현재 시스템틱(systematic)하고 대규모의 이런 폭행이라든가 인권 탄압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는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선입견도 좀 있고 그다음에 탈레반이 해왔던 과거의 행적들도 있고 당연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물론 그런 시각에서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결의안을 내는데 결의안의 내용에 그냥 보도됐다고 해서 확인되지도 않은 그 내용들을 여기다가 일일이 다 적어 가지고 나중

에 ‘이것 가짜 뉴스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확인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의안에 담는 게 중요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인권 보호를 촉구하거나 이런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성들이, 그런 내용들을 좀 강조해서 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탈레반 정권하의 외교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사실 지금 대단히 유동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사실 국제사회하고 흐름을 좀 같이해야 될 면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탈레반에 대해서 계속 적대적인 관계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뭔가 저기를 해 나갈 것인지 사실 이런 여지들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 수준의 국회 차원의 결의안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저는 결의안이 지금 막 외신으로 보도된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이것 가짜 뉴스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확인되는 사실들 중심으로 해서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들 있잖아요, 인권 그다음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원칙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이런 것들은 중요한 문제겠다 생각하는데요.

○소위원장 이재정 김경협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제가 여야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국회 결의안의 형식에 비추어 외신을 인용하는 등의 방식은 우리 국회의 권위 측면에서도 조금 단순화시키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제안을 드렸고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레반의 이슬람의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여성 인권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서 여야 위원님들이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고, 그 측면에서 저희가 우려와 일부 규탄의 취지를 담는 것 자체는 다른 의견은 아니실 것 같습니다.

갈무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조태용 위원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말씀에 저도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하나, 탈레반에 대한 규탄이 저는 옳은

일이고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는 탈레반에 대한 규탄은 바로 김경협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고려 때문에 제약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은 국회가 정부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국제 인권 커뮤니티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우리 입장을, 규탄의 입장을 분명히 내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초당적인 외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잘 감안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재정 예.

○김경협 위원 대안을 다시 정리를 한번 하세요. 그리고 대안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실효적인 논의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인권 문제에 대한, 기본권에 대한 원칙은 우리가 유지하되 너무 구체적으로 나가게 되다 보면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확실히 지켜 나가되 너무 구체적으로 우리가 서술하게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태용 위원 대안을 하나 만들어서 보시지요. 별 건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재정 이게 또 시의성도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탈레반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본인의 기조를 또 이행 의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우려를 담은 취지의 내용은 시의성 있게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그 취지를 살리는 방식으로 대안을 정리하는 것을 전제로 의결을 하는 방법과 또는 전체 상임위에서 관련된 대안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논의하는 방법, 그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들이 다소 각각으로 흩어져 있는 것 같아서 대안을 마련하고 재차 확인을 하셔야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좋지만 취지를 살리는 방식으로 조태용 위원님 하고 제게 위임을 해 주시면 관련된 내용을 의결하고 문구 위임을 통해서 취지를 살리는 방식으로 저희가 의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의견이?

○김홍걸 위원 좋습니다.

○김영호 위원 좋을 것 같은데요. 위임을 하고 추후에……

○조태용 위원 괜찮으시지요?

○지성호 위원 저도 괜찮습니다.

○조태용 위원 부의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정진석 위원 예.

○소위원장 이재정 그러면 오늘 수렴된 취지를 반영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그 대안과 관련한 문안 작성 및 문구 수정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님께 위임을 해 주시면 저희가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우리 법안소위에서는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및 인권보호 촉구를 위한 결의안(대안)을 마련하여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 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결의안(배현진 의원 등 103인 발의)(의안번호 2111733)

4.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의 ‘군함도(하시마탄광) 강제노역 명시’ 권고 등에 대한 일본의 즉각적인 약속 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양정숙 의원 등 68인 발의)(의안번호 2112022)

(11시34분)

○소위원장 이재정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결의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의 ‘군함도(하시마탄광) 강제노역 명시’ 권고 등에 대한 일본의 즉각적인 약속 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동하 소위 자료 7쪽입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노역 사실을 부정하는 등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시 약속한 후속조치를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본 정부의 성실한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2건의 결의안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결의안의 일부 표현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의한 강제노역 피해 대상이 한국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인’이라는 표현을 ‘한국인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군함

도'라는 표현을 '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로 수정하여 강제노역이 발생한 장소를 명확히 지칭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재정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결의안 2건, 배현진 의원님 그리고 양정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결의안의 취지에 정부도 공감하고 전반적으로 수용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2015년 세계유산 등재 시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를 명시한 이번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 문구를 그대로 원용함으로써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당시 문헌은 '1940년대 일본 근대산업시설 일부에서 수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노역하였다'라는 원문으로 일치시킬 수 있겠습니다.

한편 등재 취소와 관련해서는 유네스코 규정상 유산의 특성이 상실될 정도로 파괴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므로 동 유산의 등재 취소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의 외교적 노력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간 유네스코와 21개 세계유산위원국을 대상으로 전방위 교섭을 해 온 결과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후속조치 불이행에 대해 전례 없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컨센서스로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부는 앞으로도 유네스코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 개선 등 일 측이 구체 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일본 정부에 이번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을 조속히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재정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2020년 12월에도 유사한 취지의 결의안이 우리 국회에서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유네스코에서 7월 추가 권고가 있었고요.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환기하자는 취지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12월 결의안과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결의안을 다시 한번 널 필요성 등등에 대해서 심사의 초점을 맞춰 주시면 어떨까?

작년 12월 결의안에 이어서 거듭 강조될 필요

가 있다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 심사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어떨지 제가 한정해서 한번 여쭙습니다.

○조태용 위원 일본 정부가 사실은 2015년에 근대산업시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을 때 서면으로 약속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서 들어갔지요?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예.

○조태용 위원 국제적인 의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외교부에서 보시기에 일본이 정말 이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런 평가가 맞는 것이지요?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태용 위원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그런 취지의 결정이 한 번 더 있었던 것이고, 사실 이것은 강하게 규탄을 해야 마땅한 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 두 내용이 사실은 유사하고 같은 방향인데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두 포인트인데 한 포인트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두 번째 포인트가 등재 취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등재 취소라는 말을 실현시키기가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그것은 일반적인 평가가 쉽지는 않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태용 위원 취소하는 절차는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지금 현재 취소된 경우가 예를 들어서 세계문화유산의 근처에 공단이 들어선다든가 완전히 성격이 변하는, 자연유산의 경우는 자연을 파괴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3건 있었습니다.

○조태용 위원 우리 국회 결의안에 등재 취소를 강력히 촉구하는 의사 표현이 들어가는 것을 정부에서 혹시 반대하는 건가요?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아닙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희 정부도 지금 지속적으로, 사실 일본이…… 조 위원님께서도 그 당시에 외교부차관님이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허용을 해 준 이유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이 끌려간 강제수용소라든가 또는 세네갈의 노예섬, 고래섬 등등 이런 게 부의 유산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일본하고 허용을 해 준 건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군함도가 얼마나

저희 노동자들에게 후한 대접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일본의 도쿄에 있는 시설에 들어가 있고요. 한국인과 다른 외국인들이 강제적으로 가서 노역을 했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당연히 저희 정부는 지속해 왔고 앞으로도 기회가 닿을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시정할 때까지 지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재정 참고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2020년 12월에는 우리가 4항으로 해서 ‘권고사항을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회피할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세계유산 등재 삭제를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방식으로 주문이 들어가 있기는 했습니다. 관련해서 2020년도 결의안 내용을 저희가 참조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 필요한 측면이 있거든요.

전문위원님, 혹시 비교해서 간략히 설명 한번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조태용 위원 찾는 사이에…… 2021년 올 7월 달에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국제사회에서는 상당히 강한 표현입니다.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결의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경협 위원 지금 대안은 어디에서 만든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지동하 대안은 실무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직 여야 간에 협의가 없어서……

○김경협 위원 아, 이것은 협의가 안 됐어요?

○소위원장 이재정 예.

○김경협 위원 그러면 보고 여야 간에 해서 의견 없으면 의견 없고 정부에서도 큰 문제 없으면 빨리 넘어가지요.

○소위원장 이재정 예, 그러면 올해 7월 권고조치 미이행을 이유로 다시 한번 권고안이 나왔던 상황 그리고 또 이 건에 대한 우리 국회의 엄중한 인식 등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결의안을 내는 것에 위원님들 의견을 모으신 것으로 하고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자세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완벽한 안을 여러분께 지금 배포해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그러면 취지를 모두

담는 한에서 각 의원, 배현진 의원안과 양정숙 의원안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조태용 위원님 체계·문구 성안 등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해 주시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본 소위원회에서 결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태영호 위원님.

○태영호 위원 위원장님, 전적으로 그것은 동의 하고요.

제가 질의 하나 할 것은 여기 지금 양정숙 의원의 원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본 정부가 진실을 왜곡하는 등 잘못된 행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본 정부의 잘못된 행태는 현재진행형이지요? 계속……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그렇지요. 시정을 안 했으니까 부작위에 의한 진행이지요.

○태영호 위원 그러니까 ‘경우’가 아니지요?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예.

○태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 지난번에도 결의에 나왔는데 우리 정부가 그 이후에 혹시 일본과의 대화 기회라든가 지속적으로 매해 몇 년 정도 이것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 꾸준히 지금 해 오고 있는 사항인가요?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예, 이것은 저희 정부도 계속 꾸준히, 그냥 한 번 이렇게 국회에 보고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국장 또는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얘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태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국회의 촉구 결의안이라고 할 때는 대상이 누군가가 중요한데 제가 이해하건대는 보니까 대상은 일본 정부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촉구 결의안이라고 할 때는 잘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 일을 방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똑바로 하라고 주의하고 각성 주는 의미에서 이런 촉구 결의안을 하고 있는데, 전체 내용을 보면 결국은 제가 드는 인상은 지금 우리 정부도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 나서라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닌가요?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여튼 정부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일본 측에 대해서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문화유산위원회라든가 국제 다자포럼에서도 이 문제를 저희가 틈틈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영호 위원 글썄요.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 반대해 왔으니 앞으로는 반대할 거고 또 차관님의 설명 들으면 우리 정부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어서 정부로서는 할 바를 다 하고 있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렇지요?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예, 저희는 하여튼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 하다 보면……

이게 이 문제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 그때도 일본은 굉장히 입장이 강했습니다. 자기들이 이것을 하는데 뭐가 문제냐. 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일본에게 압력을 가했고 또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결국은 일본이 그렇게 된 거니까……

○태영호 위원 글썄요, 그것은 이해되는데 이 결의안의 대상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내용들을 보면 지금 정부가 잘 안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주의·환기 이런 차원으로 되어 있는데 괜찮겠느냐? 제가 이 점을 지금 여쭙어본 겁니다.

○외교부제2차관 최종문 제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여튼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재정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이상 2건의 결의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결의안 내용과 소위원회 심사 내용을 반영하여 본 위원장이 각 당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수정 정리한, 일본 정부의 ‘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 한국인 강제노역’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외교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문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한 이후에 통일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다 보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재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일부 소관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통일부에서 최영준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57)

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01)

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95)

○소위원장 이재정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 안민석 의원, 김영주 의원, 김경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상세한 사항들을 검토한 안건입니다. 전문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경과 등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 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안소위가 네 차례 진행됐고요, 지난 네 번째 소위 때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관련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여러 차례 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통일단체, 인권이나 탈북민단체 지원 등이 남북관계 관련 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문구를 찾으면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건영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는데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부분을 열거하고 마지막에 ‘등’을 붙이는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안 제12조의2제1항 5호 부분만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그 내용은 7페이지에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5호에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윤건영 위원님께서 남북관계 발전법 제2장에서 열거되어 있는 조 제목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 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적 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 이렇게 제시하셨고요.

옆에 보시면 통일부는 지금 5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열거하기보다는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이라는 문안을 제시해서 좀 더 간략한 문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12조의2 5호 부분만 논의를 해 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재정 다음은 차관계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최영준 통일부는 김영주 의원님, 김경협 의원님 그리고 안민석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 주요 내용을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남북관계 발전 기반 조성사업의 종류를 이렇게 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다양한 사업 및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책무 규정,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무 규정을 활용해서 관련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법률 개정 시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주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민간단체 지원 관련 신규사업 추진 등 후속 절차 진행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또 그리고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재정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2조의 5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저희 법안소위 때마다 마련을 하느라고 계속 의견들이 분분했었는데요. 그 가운데 동법의 취지 자체, 목적 자체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었는데 윤건영 위원님처럼 이렇게 각각 거시하는 방식과 정부에서 제안한 것처럼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라는 표현을 인용하는 방식, 두 가지 내용의 의견이 조금 좁혀지고 있는 상황 이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태영호 위원 지금 차관님도 하시겠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장시간 동안 한 토론 중에서 기본은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그 범주를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그것을 가지고 상당한 논쟁이 있어서 이것은 범위가 정말 너무 포괄적으로 크기 때문에 저로서는 지금 정부안 ‘6조부터 11조까지’라고 해 놓으면 원래의 입법 취지에 맞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재정 지성호 위원님.

○지성호 위원 조정안에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이라 하였는데 정부는 제6조부터 11조를 근거로 들어서 인권 개선을 명시했다는 입장인데요.

제9조제1항은 ‘정부는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 해결과 인권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 개선이라 하면 정당한 비판을 받을 권리, 이동의 자유, 거주지 자유, 사회 참여의 자유 등까지도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물론 가족의 상봉과 같은 문제도 인권 문제지만 현행 남북관계 발전법상 인권 개선은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는 있으나 개정안에 북한 인권이라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명시하는 조건하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재정 조태용 위원님.

○조태용 위원 수석전문위원한테 좀 묻고 싶은데요.

심사자료 4쪽에 보면 윤건영 위원은 인권 개선이라는 말을 여기에 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인권 개선은 빠졌어요, 윤건영 위원 제시안에는? 왜 2개가 차이가 나지요?

○전문위원 최용훈 저희가 알기로는 6조부터 제목을 열거하신 걸로 이해를 해 가지고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조태용 위원 사실 발언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전문위원 최용훈 말씀은 인권 개선을 하셨는데요. 전반적인 취지는 저희가 보여지기에는 조제목을 열거하셨습니다.

○조태용 위원 윤건영 위원이 나중에 그렇게 정리를 했나요, 아니면 그렇게 해석을 했나요, 수석전문위원이?

○전문위원 최용훈 윤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딩을 대체로 정리를 한 부분이거든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부분인……

○조태용 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거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한 대로 정리해 놓고 위원들 심사에 맡기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고 이 인권 개선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이슈를 어떻게 문안에다 반영하느냐가 지금 문제의 핵심인데, 여당 위원께서 인권 개선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본인이 빼 달라고 말씀도 없는데 수석전문위원이 정리하면서 뺐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하여튼 그것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고.

지금 말씀처럼 인권 개선도 대북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북한 정권만 상대할 수 없는 일이고 북한 주민을 상대해야 됩니다. 북한의 주민을 생각하면서 인권 개선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남북관계 발전법도 보시면 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이 같이 갑니다. 이것이 북한인권법에서도 그렇고 그 사이에 말하자면 여야 간에 합의점을 도출한 것이지요.

인도적 지원하고 인권 개선은 2개를 같이 넣어서 양당의 입장을 적절히 균형 있게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수정안에 인도적 문제 해결만 나오고 인권 개선이 안 나오게 되면 이것은 제 입장에서 굉장히 균형이 기울어진 그런 수정안이고 이대로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실질적인 문제로서 과거 한 3~4년 정도, 제가 좀 말을 돌리겠습니다마는 인권 개선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나 관심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 본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더더욱 인권 개선이라는 말을 해야 될 일로 적시하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문제의 중요성이 더 소홀해지지 않겠나, 거기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더 저하되지 않겠나 하는 현실적인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인권 개선이라는 말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사실은 저희가 이 문안을 합의를 잘 해서 어떤 법안을 만들 수 있을지…… 사실 관건이라고 하는 것은 1차·2차·3차 논의 때 계속 노정이 됐었다, 사실 그 입장이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통일플러스센터에 대해서 통일부차관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법안 내용에 통일플러스센터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지만 법안의 3조를 보면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의 지역별 설치·운영’이라는 표현으로 통일플러스센터를 의미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2020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외통위 전문위원이 검토한 검토보고서에 보면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인천의 통일플러스센터가 실제로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코로나 같은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당연히 겪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돼 있지 않고 좀 지적할 사항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통일부에서는 사업계획 수립할 때 사업 추진 필요성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동 사업의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예산의 이·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외에 한두 가지 더 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지적인데.

그렇게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 이 통일플러스센터의 개념은 제가 보니까 일리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지만 첫 번째,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천 통일플러스센터가 사실은 좀 더 잘 운영이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보면서 성공 모델로 해서 다른 지역에 확산시켜 나가는 좀 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은 이번에 국정감사 기간에 우리 외통위에서 인천 통일플러스센터에 가서 실제 실태점검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이 법안을 더 의미 있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갈 수가 없어서 우리 의원실의 보좌관을 어제 인천으로 파견을 해서 실태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코로나 상황들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개념이 정립이 안 돼서 유기적으로 잘 운영되지 않은 점도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통일플러스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법에 조항을 넣지 않고도 시범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범사업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이 책정이 되면 목포라든지 좀 희망하는 지자체하고 해서 시범사업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 통일플러스센터 설치의 근거조항이 될 수 있는 조항을 여기에 집어넣는 법을 올 가을에 통과를 시키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한 의문이 좀 있고요. 역시 이것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잘 성공을 시켜 가면서 가야지 법이 앞서 나가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점을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재정 다른 위원님.

지성호 위원님.

○지성호 위원 차관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통일플러스센터 관련해 가지고요.

통일플러스센터가 지금 인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면 그 안에는 하나센터도 그곳에 들어가 있고 교육센터도 만드는 것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또 통일부라든가 인천시, 지방정부가 소통을 하는 플랫폼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존경하는 조태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코로나 정국인 것도 감안하더라도 지금 현재 예산을 집행하고 더 확산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봤을 때 아직까지 이것을 확산을 해야 되거나 법 안에다가 조항으로 넣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기가 좀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탈북민들, 그 안에 하나센터도 있으니까 그 지역의 탈북민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 봤습니다, 민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논현동에 있던 하나센터가 지금 송도로 이사를 가다 보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겁니다. 교통이 편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특히 그 지역에 탈북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교통이 불편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현재 그나마 모델로 볼 수 있는 인천 통일플러스센터가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탈북민 정착 관련 사업에 있어서도 지금 문제점이 있다, 이것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법안에 담기까지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이재정 태영호 위원님.

○태영호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법안 전체에 대한 토론인가요, 아니면……

○소위원장 이재정 전체……

○태영호 위원 7페이지, 남북관계 발전법에서 우리 법안소위 대안 그것만 토론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 법안 전체에 대한 토론인가요?

○소위원장 이재정 지금 설명 자체는 앞부분에 한 것에 대해서 했는데요.

○태영호 위원 전체에 대한 토론이지요, 지금? 저는 왜 그러냐 하면 7쪽 토론하다 왔다 갔다 해서 지금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다 토론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소위원장 이재정 예, 그렇게 하시지요.

○태영호 위원 오케이. 그러면 방금 통일플러스센터에 대한 문제인데요.

차관님, 이 통일플러스센터 지금 현재 이 법안이 없어도 올해 지금 몇 개 추진하지요?

○통일부차관 최영준 지금 인천에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 두 군데 추진됩니다.

○태영호 위원 내년도 두 군데 지금 들어가 있지요, 예산에?

○통일부차관 최영준 정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태영호 위원 정부안에 들어가 있지요? 얼마 정도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통일부차관 최영준 37억 정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영호 위원 47억? 37억?

1개 아니면 2개 확대하는……

○통일부차관 최영준 2개.

○태영호 위원 2개로 늘리는데 47억.

제가 알기에는 47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통일부차관 최영준 예.

○태영호 위원 그럼 그 47억은 어디서 나오는 돈이지요?

○통일부차관 최영준 국비와 우리 정부 예산……

○태영호 위원 글썄요, 예산인데 통일부의 전체 예산에서 조절해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편성해서 나오는 건지.

이것 혹시 다른 데 쓰게 된 돈에서 통일플러스센터에 돈을 돌려쓰는 것 아닌가요?

○통일부차관 최영준 그렇지 않습니다.

○태영호 위원 대북지원 예산에서 빼서 쓰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차관 최영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부기획조정실장 이상민 일반예산으로 별

도로 심의 편성돼 있습니다.

○태영호 위원 별도로 편성하는 거예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 이상민 예.

○태영호 위원 그러면 만약 이 법이 없다면, 지금 현재 2개 또 추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법이 없어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통일플러스센터는 늘려 나갈 수 있는 거지요?

○통일부차관 최영준 그것은 불확실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인천 통일플러스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에 3년…… 18년 9월 10일 날 출범을 했고요 그동안에 운영을 하고 특히 19년도에는 코로나가 없는 상황에서 1년을 완전히 운영을 한 다음에 20년에 연구용역으로 평가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과는 있는데 예산도 적고 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입지조건도 빌딩의 한 층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단독 건물로 해서 접근성도 강화하고 기능도 확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기재부랑 상의를 했더니 예산당국이 이것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태영호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차관님 그것은 다 알겠는데 통일플러스센터의 효용성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차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 정부의 돈만 더 쏟아부으면 결국은 더 합리적인 운영과 또 우리 국민들에게 호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로 될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결국은 돈을 더 투자하면.

그런데 진짜 통일플러스센터에 대한 국민의 호감도가 그렇게 높은가요?

○통일부차관 최영준 지금 말씀드린……

○태영호 위원 효용성 측면에서.

○통일부차관 최영준 효용성 측면에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용역도 검토를 해 봤고요. 충분히 그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던 것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런 과정에서 전국에 확산시키는 게 좋기는 하겠는데 그러려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거고 이번에 예결위 검토 과정에서도 통일플러스센터 관련해서는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국회 내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태영호 위원 차관님,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

서 다른 분들의 지적을 좀 들어 봤는데요. 제가 이것은……

남북문화센터 나가 보셨지요?

○통일부차관 최영준 가 봤습니다.

마곡 말씀하시는 거지요? 마곡에 있는……

○태영호 위원 예.

그것 돈 총 얼마 들어갔지요? 제가 알기에 수백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일부차관 최영준 예, 그렇습니다.

○태영호 위원 저도 가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건물을 짓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 다 돌아다니 보면서 느낀 인상은 뭔가 하면 거기에 상담치료실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게 허전한 감도 있겠지만 건물 전체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 크고 멋진 곳에.

도서관에 들어가서 과연 이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제가 돌아봤는데 결국은 남북문화센터인데 그 도서관을 결국은 이용자가, 쉽게 이야기하면 별로 이용자가 없어서 그 주변 동네 마을에서 애들이 와서 쓰게 이렇게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렇게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할 바에는 여기다가…… 이게 과연 남북문화센터라고 할까? 차라리 구에서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도서관으로 하는 게 낫지’. 결국은 그래서 저도 대단히 효용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일각에서는 지금 남북통일센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주장도 있어요. 결국은 통일부가 지방에 자기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물리적인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과연 우리가 47억씩……

지금 2개 확대하는 데 47억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게 돼서 전국에 이것을 확대하면 결국 이것은 통일부 관할 지방 건물 기관으로 되겠지요?

○통일부차관 최영준 지금 현재 인천 통일플러스센터에도 통일교육을 담당하던 지역통일교육센터와 그다음에 하나센터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태영호 위원 글썄요, 그 운영권을 누구한테 주지요?

○통일부차관 최영준 저희가 통합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지 이것저것 새로 만들어서 별도로 확산시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인천 통일플러스센터는 그게 처음 만들어 놓고 저희가 운영을 특별히 해 보기 위해서 비별도로 통일부 직원과 그다음에 인천에서 공무원들이 몇 분 나오시고 민간의 하나센터와 지역통일교육센터가 같이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만들더라도 저희 통일부 직원들이 자리를 만든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다만 중앙에서 그런 모델을 만들고 지방에서 자체적인 역량하에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영호 위원 차관님도 지방에 다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국비로 건설한 수많은 대상들, 건물들 있는데—박물관 이런 것—그야말로 가 보면 문이 닫혀져 있고 그 안에는 관리인 몇 명이 있는데 텅 비어서 그야말로 애물단지로 된 그런 게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천에는 탈북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좀 많은 탈북민들이 갈 수 있는데 지금 통일부는 앞으로 전망적으로 25개 건설하자는 거지요, 통일플러스센터?

○통일부차관 최영준 아닙니다. 전국에 권역을 나눠서 7개……

○태영호 위원 7개 정도?

○통일부차관 최영준 예.

○태영호 위원 그러면 그 7개 정도 하면 거기에 찾아갈, 말하자면 어느 정도의 접근성을 보장하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것을 이용할 그런 인원이 많을까요, 그 많은 정부의 돈이 들어가서?

○통일부차관 최영준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플러스센터에는 그 지역의 통일교육 수요 그다음에 교류협력 수요를 저희가 충족시켜드릴 수 있는 기능하고 지역에 원래 있는 지역통일교육센터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탈북민이 많으신 경우에는 하나센터도 들어갈 수 있고 해서 종합적인 통일교육 또는 통일체험의 학습의 장으로 만들어서 지역의 통일수요를,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개 정도면 충분히 수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영호 위원 이것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하고 우리가 일단 입법을 하면 결국은 정부 예산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와 관련한 또 주무부처 인원도 늘어나게 되겠지요.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충분한 그런 검토, 실험 단계를 거쳤는가라는 것을 저는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인천이나 목포에 건설한 이미 해 놓은 것도 효용성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단계에서 지금 이 시점이 우리가 입법을 통해서 이것을 하는 시점이 맞느냐, 전망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이 과연 옳은 시점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여쭙본 겁니다.

○소위원장 이재정 차관님,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법 12조의2 1항 3호는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의 지역별 설치·운영’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지금 통일플러스센터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안을 마련했다라고 되니까 지금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설득력과 그간의 운영의 어떤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혼재해서 국회에서 심사를 하게 된 겁니다.

사실상 이 규정은 남북관계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사업 추진에 대한 임의규정에 근거한 다양한 활동들을 규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설명 자체를 통일플러스센터로 한정해서 생각하시니까 위원님들의 지적도 온당합니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센터의 운영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들은 국회에서 마땅히 할 일이고요. 그 부분과 법안의 심사가 지금 혼재되고 있는 겁니다.

그 점만 지금 당장 통일부 입장에서는 그것이 우선적인 과제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법안은 그것만을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명에 있어서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너무 그 이슈에 집중해서 보지 마시고 통일부가 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와 장기적 전망에 대한 총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플러스센터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들은 국회 점검의 일환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고 향후에 그 사업에 있어서도 분명히 국회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희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행한다’라는 당연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꾸었고요.

보시다시피 1호의 홍보 방안이라든지 2호의 국

민참여 사업이라든지 3호의 지역 시설 운영이라든지 해서 열거하는 방식이고 임의적 규정이고 그래서 이 법안의 심사와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의 부분은 실제 지금 통일부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한 건데 그것은 국회의 심사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분을 해서 판단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의견을 드리고요.

저 역시도 지금 통일부가 국회를 설득하기 위한 통일플러스센터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만큼 충분히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염려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지만 법안의 심사를 조금 구분해서 판단해 주시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회가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어떠신가요?

○지성호 위원 제가 보기에 신중히 검토하고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도 지금 많이 가고 있고.

○소위원장 이재정 이 법안 자체는 플러스센터의 근거 규정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봐 주시면 어떨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지성호 위원 앞에서 말씀드렸던 북한인권이 정확하게 명시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도 지금 클리어하게 되지 않고 지금 쟁점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해결된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법안소위 논의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논의를 했던 겁니까?

○소위원장 이재정 예, 계속 논의를 해서 또……

○김경협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안인가요?

○소위원장 이재정 예.

제가 아까 윤건영 위원님의 언급에는 사실 9조 1항에 있는 인도적 문제와 인권 개선과 관련된 부분이 같이 언급이 되었는데 아마 우리 행정실에서는 제목만 따오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시면서 통상의 법안을 정리할 때의 방식으로 정리를 하시면서 그 부분 논의의 중요성을 못 담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태용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 것 같고요.

아무리 논의 과정의 문서이기는 하지만 이 내용들은 정정하는 게 맞고 본 회의록을 통해서도 그 논의의 경과가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안은 그와 같은 열거의 실시의 방식이 통상의 법조 실시례와는 다르기 때문에 제6조부터 11조까지라고 하면 당연히 이 논의의 경과를 감안해서도 그렇고 또 법안의 내용을 봐서도 9조 1항의 인권 개선 부분은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호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신 의문은 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원회의 소통 과정을 좀 감안을 하셔서 동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한번 다시 여쭙보네요.

○지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앞에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조태용 위원님 말씀이랑 이어지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또 본 위원이 보기에요 현재 북한인권은 굉장히 후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넣는 이 규정 자체가 그 단체들에 대한 예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사실은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있어 가지고, 물론 인권 개선이라는 그 조항을 넣음으로 해 가지고 해석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는 있으나 저희들의 입장도 고려해 주셔야 되는 것이 명확하게 해 주셨을 때 저도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명확한 이해를 갖고 그리고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재정 아니면 윤건영 위원님의 당초 안처럼 인권 개선 문제를 여기다 추가를 해서 하는 방법은 어떠실까요, 저희가 그것을 법문에 드러내야 된다는 취지를 좀 더 살려서?

○김경협 위원 이 법안의 성격이 남북관계 발전법이잖아요. 그리고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인권법이 따로 있는데 북한인권법에 개정해야 될 게 있으면 차라리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넣는 방향으로 하고 이 부분 남북관계 발전은 남북관계 발전 관련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게 법체제로 맞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에 넣어야 될 생각을 전부 다 넣겠다가 아니라 넣어야 될 법안에 집중해서 그 부분을 해서 넣고, 사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실제로 제안된 부분들은 여기에 국한해서 논의를 하고.

물론 이것만 가지고도 여기에 더 넣고 싶은 다른 위원들의 요인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법안심사를 할 때 안 되면 결국 합의되는 선에서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 추가로 할 부분들은 그다음에 개정안을 내서 또다시 더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면 다른 것

전혀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가 버리면 실제로 법안 심사가 안 됩니다.

○지성호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이재정 예, 지성호 위원님.

○지성호 위원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말씀의 많은 부분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제기해 왔던 것이 북한인권법 안에 북한인권재단이 활약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통일부, 정부 측에도 말씀드렸고 여당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진척이 되지 않는 상황에 있고 또 법 취지로 봤을 때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인권단체들만 지원하게끔 돼 있는 것이 그 말씀이라면 맞는데 그 안에도 북한인권단체들과 인도주의적인 협력을 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도 함께 넣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인권재단 관련된 북한인권법과 이 법이 같은 취지인데,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법에도 북한인권단체들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민간단체들의 어려움은 저도 민간단체 활동을 해 봐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 어려운 것이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됐던 것이고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항인 겁니다.

○김영호 위원 지성호 위원님 말씀대로 윤건영 위원님 제시안을 보면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보장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북한인권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보장이 돼 있다는 것으로 저는 풀이가 되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 아닙니까?

○지성호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 것이, 이것은 솔직히 남북관계발전법 아닙니까? 남북관계발전법 안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하면 광의적인 해석을 할 때 이것은 관련된 단체들에 대한 지원으로 보여지지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인권법 같은 경우에 북한인권법에도……

○김영호 위원 잠깐만요.

지금 지성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윤건영 위원 제시안에 보면 비영리법인·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지원도 포함이 돼 있다고 풀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통일부차관 최영준 저희는 다 포함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다 포함이 돼 있는데 포괄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부 해소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철회를 해 주셔야지만 지성호 위원님이 걱정하는 지원 문제도 해결이 된다고 보니까 이것은 좀……

○지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확하게 집어 달라는 거지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호 위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지성호 위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법안보다는……

○김영호 위원 단체를 하나하나 어떻게 다 지목을 합니까?

○소위원장 이재정 저희가 30분까지 논의를 하기로 하고 안건 하나가 더 남아 있어서 효율적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취지는 다 나온 것 같고 제가 김경협 위원님께만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간 논의를 축적을 해 왔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인권 개선 부분은 본 법안에 없었던 부분이 아니라 9조 1항에 있는 부분이어서 그 내용까지 넣자는 게 윤건영 위원님 안이었고요. 그게 바로 ‘인도적 문제 해결과 인권 개선’ 부분을 다시 넣는 안이었거든요. 거기까지 저희가 의견을 모아 왔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6조부터 11조까지’라고 표현하자는 것은 정부의 안인데 통상의 법조는 그런 방식으로 간명하게 정리되다 보니까 한 건데 만약 지성호 위원님이 명확하게 언급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취지를 담아서 윤건영 위원님 조정안으로 저희가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게 하지요.

○지성호 위원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법안소위가 여러 번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진행된 과정인데 이제 와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한 것들은 무엇이냐는 생각이 들고요.

○김영호 위원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내용을 포함시켰다는 거지요.

○지성호 위원 이 법안이 몇 차례 올라왔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낸 법안들이 한 번도

이 장에 올라오지 못한, 사실은 저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위원장님께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북한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는 섭섭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지성호 위원님이 계속 회의에서 강조를 해 오셨기 때문에, 윤건영 위원님 제시안에는 지성호 위원님의 의견이 담겨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의 노력의 성과라고 봅니다. 그것을 제가 인정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소위원장 이재정** 그리고 법안을 성안하는 과정이 법안의 해석에도, 심지어 법정에서도 강력하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에서도 명확하게 공식적 입장을 밝히신 거고요.

관련 해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심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조태용 위원님 의견 어떠십니까? 윤건영 위원님 안으로 저희가 누락했던 부분 다시 삽입해서 하는 것은 어떨까요?

○**조태용 위원** ‘인도적 문제 해결과 인권 개선’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복원시켜서 합의를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인 거지요?

○**소위원장 이재정** 예.

○**조태용 위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태영호 위원** 제가 한마디 할게요.

저는 김경협 위원님이 내놓은 안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합의되는 것만 일단 모아서 대안으로 하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데서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게 뭔가 하면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의 지역별 설치·운영’, 지금 ‘설치·운영’ 이 네 글자 때문에 우리가 몇 달 동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통일부에서, 행정에서 바라는 것은 뭐냐? ‘설치’ 이게 뭐냐? 이게 결국은 통일플러스센터 문제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을 받을 수 있게 입법에서 이것을 법화해 달라, 그러면 예산받는 데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기 때문에 명백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뛰어넘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가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번에 인권 문제는 우리가 자꾸 수정만 하면 쉽게 통과될 거니 논란거리가 있는 이 지역 설치·운영 문제는 다음번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하

는 것으로 2개를 갈라놓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이 법은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은 데요.

○**김영호 위원** 이재정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설치 문제는 우리가 법률로 만드는 거고 실제로 수반되는 예산은 예결소위에서 따질 문제니까요.

○**태영호 위원** 그러니 결국은 뭔가 하면……

○**김영호 위원** 일단 우리가 근간은 만들어 놔야지 조금 더 유연성을 발휘하지요.

○**태영호 위원** 근간을 만들어 놓자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돌고 돌고 나면 통일부에서 ‘설치’라는 이 의미가 뭐냐? 결국 나오는 답이 통일플러스센터 문제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아직도 충분히 활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은 뒤로 미뤄 놓고 여야가 합의한 것만 해서 통과시키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게 아닐까요? 계속 자꾸 몇 달 동안 토론하는 문제를 가지고……

○**김영호 위원** 너무 보수적인 입장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지성호 위원** 위원장님, 법안 하나 더 남아 있다고 하시는데 다음으로 넘기고……

○**태영호 위원** 아니, 김경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되는 것만 먼저 해서 하면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재정** 통일플러스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적을 해 왔는데 사실 이번 예산의 벽을 쉽게 넘을 수 있을까요?

저는 국회의 이런 지적이 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우리가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전체적인 체계를 본다면 정부가 해야 될 여러 조치들 가운데서 구색을 다 갖추는 방식으로 저희가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관점에서 법안만을 평가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태영호 위원** 아니, 구색 갖추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설치’라는 표현 때문에 싸우고 있거든요.

○**소위원장 이재정** 임의입니다. 임의규정으로 저희가 대안에서는 임의로 바꿨습니다. 당초에는 의무규정이었는데 임의규정으로 바꿨고 사실상 우려하시는 지점들은 법안 성안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국회가 더 엄밀하게 심사해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그것과 별도로 이 법안이 당초에 정부의 어떤 역할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과의 소통이라든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총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대승적으로 고려해 봐 주시면 어떨까요?

○태영호 위원 우리가 아무리 임의규정이라도, 어느 표현은 괜찮은데 ‘설치’라는 것은 물리적인 행동이거든요.

○김영호 위원 기본적으로 통일센터가 필요하지요.

○태영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통일부가 요구하는 것이 꼭 ‘설치·운영’이라는 표현을 넣어 달라고 해야, 우리가 동의해 줘야 결국은 통일플러스센터 예산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은 명백하게 통일부에서 그렇게 답변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본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뻔히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눈감고 넘긴다?

합의되는 것만 해서 통과시키지요. 자꾸 수정만 하면 되는데, 인권 문제만 들어가면…… 계속 몇 달 동안 이 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씨름할 것 뭐 있습니까?

○소위원장 이재정 그 두 가지 논점이 저희가 계속 집중 심사해 왔던 내용인데 김경협 위원님 역시도 아직은 전적으로 동의하시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있는 입장이지요.

○태영호 위원 아니, 김경협 위원님께서 동의하는 것만 모아서 통과시키자고요.

○소위원장 이재정 함께 아울러서 조금씩 양보를 양쪽에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조태용 위원 사실은 통일부에서 통일플러스센터의 설치 근거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 통일플러스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자라고 봤더니 우리 당 위원들이 보니까 이것은 아직 지역 근거를 넣을 정도가 안 됐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결산보고서에,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봐도 지적이 몇 개가 나와 있고 외통위의 결산보고서에 지적이 나와 있으니 제가 당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고 제 의견으로서 그동안 즉 논의했던 것을 생각할 때 ‘시설의 설치·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후일로 미뤄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시설’ 때문에 통일플러스센터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같은 뜻을 담더라도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 조성’이 정도로 해 놓으면 사실은 그다음에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지역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지역별 사업하는 자체를 막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설치·운영’이 그렇게 해석이 돼 버렸고 또 그렇게 설명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태 위원님, 지 위원님, 우리 당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반대 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협을 한 워딩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두 분하고 상의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떠실까요?

○소위원장 이재정 부처 의견은 어떠십니까?

○통일부차관 최영준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 기반 조성’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안에 집중해서 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고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사실이 조항, 인권단체를 넣느냐, 북한인권 개선 문제를 넣느냐 안 넣느냐가 주된 쟁점이었고 이것은 주된 쟁점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아까 조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합니다.

○소위원장 이재정 그러면 3호 내용을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 기반 조성’으로 하고 김경협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윤건영 위원님 안으로……

○김영호 위원 지금 이 안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거기다 인권 문제를 적시를 안 하더라도……

○소위원장 이재정 윤건영 위원님이 원래는 ‘인권 개선’을 넣으셨습니다. 그게 9조 1항의 내용이고 법안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동법에 들어가 있는 안이거든요.

그래서 통일부에서 부처 의견으로는 각 법조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했지요. 법조를 인용하는 방식이 통상의 방식인데……

○김경협 위원 여야 간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으면 조금 이상하지만 가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김영호 위원** 아니, 그런데 타협이라는 게 ‘인권 개선’을 우리가 수용하고 ‘설치·운영’을 야당에서 수용해 줘야만 타협이 되는 것 아닌가요?

○**김경협 위원** 그동안에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나는 잘 몰라서……

○**태영호 위원** 아까 합리적인 얘기 하신 거예요.

○**김경협 위원** 물밑 협상이 있었습니까? 내가 내막을 잘 모르니까, 오늘 제가 신입이라서……

○**태영호 위원** 이것 몇 달 동안 토론한……

○**소위원장 이재정** 그러니까 사실상 법안을 성안할 때는……

○**조태용 위원** 윤건영 위원께서 이런 워딩을 타협안으로 지난번 회의에서 제시를 했던 것이, 지난번 소위의 토의 흐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시면 그게 그렇게 됐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하여튼 자세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 이걸 꼭 넣고 싶어 하는지는.

북한인권법 말씀도 하셨지만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제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도 없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이 있어서 꼭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희는.

○**소위원장 이재정** 다만 저의 염려는 법안이 사실은 굉장히 간결하게 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법안의 내용을 인용해서 다 실시하는 방식이 통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길어지더라도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은데,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하고 그 내용을 실시하는 방식은……

○**조태용 위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시면 조금 더 숙려하시지요, 위원장님.

다음 법안은 사실 좀 더 간단해 보이는데 심의를 빨리해서 다음 법안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는 타협안도 내고 아이디어도 내고……

○**소위원장 이재정** 법안 스킴상의 문제로, 기술의 문제로 해서 법사위에서나 또 조정할 여지가 있어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태용 위원** 아이디어는 많이 냈는데 지금 사실 두 분 100% 동의 안 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기도 했고요. 그런데 잘 감안하셔서 타협점을 찾아보고 도저히 안 되면 다음 법안소위에서 한번 더 해 보고……

○**소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어떠신가요? 윤건영

위원님 안에 이렇게 거시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기반 조성의 방식으로 저희가 문구를 변경해서 하는 안……

김홍걸 위원님 의견 어떠십니까?

○**김홍걸 위원**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김영호 위원** 그것은 마지막 안건을 처리하고 바로 하지요. 이것 잠깐만 보류시키고요, 마지막 안건 빨리……

○**지성호 위원** 마지막 안건도 조금 이야기할 게 있는 것 같은데……

○**김영호 위원** 마지막 안건도 복잡해요?

○**소위원장 이재정** 저희가 30분에 마무리를 하기로 했었고 지금 마지막 안건 같은 경우는 연한과 관련해서 조금 조정할 여지가 없겠나라는 얘기를 지난 소위 때 해 놓은 상태라서 간단하게 의견을 청취할 것이기는 하지만 그 역시도 지금 뒤로 늘린다고 해서 저희가 논의할 시간이 많은 건 아닙니다.

○**조태용 위원** 그런데 순서를 지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정이 좀 있어서 이것을 정리하고 마지막 안건을 가면 원활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이재정** 예, 논의할 시간이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서 마무리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은 의견 어떠세요?

○**김영호 위원** 저는 운영·설치 부분은 야당 위원들께서 이것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 부분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미 아까 차관님께서도 확인했다시피 지성호 위원님이 계속 주장해 오신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 법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여야 위원들이 서로의 입장을 배려해 주신다면 운영·설치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고 저희도 인권 개선 노력을 위한 것을 동의해서 합의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예산소위가 있기 때문에 태영호 위원님께서…… 이게 당장 어떤 예산이 투입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승적으로 결단해 주시면 저희도 특별히 문제없이 이 문제를 잘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조태용 위원** 제12조의2에 1·2·3호 세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첫 번째는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 및 시행'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국민 참여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만 사실은 법의 구체성이 갑자기 커졌어요.

그러니까 지역별 기반 조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당연히 통일플러스센터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말하자면 기반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데 이것만 '시설의 설치·운영'이라고 하니까 법 전체의 균형이 안 맞는 부분도 조금 있고 사실은 시설이라고 하면 또 어떤 시설인지 나와야 되는 거지요, 법에 이렇게 나왔으면.

그래서 김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 우려사항이 제가 말씀드린 정도의 조금 추상적인 워딩으로 들어가도 사실은 해소는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도 그렇게 내부 토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소위원장 이재정 김경협 위원님.

○김경협 위원 저는 여야 간에 합의되면 무조건 존중합니다.

○김영호 위원 저는 위원장님이 판단해 주세요.

○지성호 위원 저는 다음에 좀 더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종합적으로 한번 의견을 내주세요, 어떻게 하시겠다고.

○소위원장 이재정 조태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윤건영 위원님 안처럼 각 조문에 있는 내용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 그리고 또 본건과 관련해서는 자구를 조금 수정해서 지역 기반 조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안을 주셨고 대체적으로 위원님 의견이 모아지시는데, 지성호 위원님은 앞부분은 동의를 하시는데……

○지성호 위원 두 가지 다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재정 저희가 여기까지 오는 데 정말 무수한 논의와 절충점들을 찾아왔는데 지성호 위원님 한 번만 더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어떨까요?

○지성호 위원 정부 측하고 이야기를 좀 더 해 보고 저는 다음번에 입장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위원장님 판단은 지성호 위원님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 않아요?

○소위원장 이재정 예, 수용해서 나열하는 문구에 인권 개선을 넣는 걸로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하여튼 지성호

위원님을……

○조태용 위원 그러면 한 번 더, 소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문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서 지금 뭐가 논의되고 있는지 저도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이게 맞는 건지 전문위원하고 한번 확인하십시오.

○전문위원 최용훈 예.

○조태용 위원 그러니까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 속에 5항으로 '한반도 평화 증진, 남북 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적 문제 해결과 인권 개선 등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전문위원 최용훈 예, 맞습니다. 7쪽에 '과 인권 개선'이 추가되는 겁니다.

○조태용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있는 제12조의2의 3호는……

○전문위원 최용훈 6페이지입니다.

○조태용 위원 6페이지에 보시면 제12조의2는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게 본문이 되고 3호가, 제가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 조성'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전문위원 최용훈 예.

○조태용 위원 그 문안을 확인해 주신 거지요? 조금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일부 위원 협의)

○김영호 위원 제가 지금 수용하기로 했어요. 조태용 위원님 의견을 수용하겠다고요.

합의 처리하지요. 저도 위원장님의 압력을 받아서 바로 수용하는 겁니다.

○조태용 위원 제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김영호 위원 결국은 관철하신 건데요.

○조태용 위원 하여튼 이게 어렵게……

○김경협 위원 많은 선례를 떠나서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에 대해서 가장 우선시한다니까.

○소위원장 이재정 고맙습니다. 지혜를 보태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 이상 3건의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의 심사 내용을 반영,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정된 시간이 넘어섰지만 8항 잠시 설명 듣고 간단히라도 의견……

○조태용 위원 3개나 다 통과시켰으니까 다음번에 할까요?

○지성호 위원 다음에 하세요.

○조태용 위원 어려운 것 하나 해결했는데……

제가 도저히 시간이 좀,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이재정 제가 8항 설명, 위원님들 의견 듣고 간단히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당초에 30분까지로 야당 위원님들이 특별히 부탁을 하신 다른 사정들도 있고 해서요.

○조태용 위원 이게 만료 기간이 내년도 4월이니까 다음번에 해도 결코……

○소위원장 이재정 연장 기간과 관련해서 조금 조정하는 내용으로 부처에서도 조율한 의견들 야당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다음 기회에는 좀 더 조율된 입장으로 바로 논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전제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체계·자구 심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 직원 여러분, 보좌진을 비롯한 국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부

제 2 차 관

조 정 기 획 관

공공문화외교국장

본 부 대 사

통일부

차 관

기 획 조 정 실 장

교 류 협 력 실 장

최 중 문

김 재 휘

견 중 호

홍 영 기

최 영 준

이 상 민

박 철

○출석 위원(8인)

김 경 협 김 영 호 김 홍 걸 이 재 정

정 진 석 조 태 용 지 성 호 태 영 호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지 동 하

전 문 위 원 최 용 훈